

연세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신(구)대조표

가. 제(개)정사유

- 1) <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>(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'20.5.13)으로 마련하여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」개정 됨에 따라 변경 내용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반영-[별표 1] 연구비 예산편성 기준표 비목 변경(학생인건비, 연구시설·장비비, 연구활동비)
2) 규제 완화 사항 반영- [별표 4] 연구과제 변경사항 승인 구분표

다. 개정 규정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부칙 [별표 1] 연구비 예산편성 기준표 직접비- 학생인건비 ○ 연구책임자-학생연구원 간 통합관리계정단위 참여율을 기재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한다	부칙 [별표 1] 연구비 예산편성 기준표 직접비- 학생인건비 ○ 연구책임자-학생연구원 간 통합관리계정단위 참여율을 기재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한다.	내용수정(양식 추가)
부칙 [별표 1] 연구비 예산편성 기준표 직접비- 연구시설 장비비 ○ 해당 연구사업의 최종(단계)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.장비와 부수기자재(해당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 및 범용성 기자재는 제외) ○ 연구시설의 설치.구입.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○ 컴퓨터 사용료, 전산처리 및 관리비 ○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. - 해당 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 -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,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-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(프린터, 복사기, 개인용컴퓨터 등 OA 기기) -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	부칙 [별표 1] 연구비 예산편성 기준표 직접비- 연구시설 장비비 <기존 내용 삭제> ○ 해당 연구사업의 최종(단계)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.장비와 부수기자재(해당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 및 범용성 기자재는 제외) ○ 연구시설의 설치.구입.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○ 컴퓨터 사용료, 전산처리 및 관리비 ○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. - 해당 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 -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,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-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(프린터, 복사기, 개인용컴퓨터 등 OA 기기) -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<변경 내용> ○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·장비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에 관한 경비와 유지·보수 및 운영비 등 -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(단계)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(검수완료)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· 장비(구입·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	*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」 (개정본,2020.06.30.) P.71 내용 수정본 반영

		상비 포함) -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의 임차·사용대차에 관한 경비, 연구 시설·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·설치하는 경비, 유지·보수 비 및 운영비 - 연구개발성으로 시설·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·장비의 개발 경비 -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·시설의 매입·임차·조성비, 설계·건축·감리비 및 장비 구입·설치비	
직접비- 연구활동비 <기존 문구 상동>		직접비- 연구활동비 < 신설 추가 내용 > ○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(단계) 2개월 이전에 도입(검수완료)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(컴퓨터, 프린터,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) 및 소프트웨어(컴퓨터 구동 프로그램,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, 바이러스 백신 등)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 ※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하는 연구용 S/W 라이선스는 사용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경비 집행 인정 (다만, S/W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되는 경우에 한함) ※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용 S/W 라이선스사용료를 모아 기관단위로 통합하여 구매·관리 가능(기관단 위 연구용 S/W라이선스 통합구매를 위해 기관장 명의로 과제별 비용을 분담한 확인 공문서 구비)	*연구용 S/W라이선스 비용 집행 합리화(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, 자문위, 20.5.13) *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」(개정본, 2020.06.30.) P.73.
[별표 4] 연구과제 변경사항 승인 구분표		[별표 4] 연구과제 변경사항 승인 구분표 – 표기내용 삭제	
구분	내 용	비 고	
지원 기관 승인 사항	① 연구책임자의 변경 ② 연구수행 기간의 변경 ③ 연구수행 기관의 변경 ④ 참여기관의 변경 ⑤ 위탁개발비를 계획보다 20%이상 증액할 경우 ⑥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⑦ 건당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의 연구장비·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,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의 연구장비·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,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	인건비 당초 대비 20%이상 증액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함	* 학생인건비 변경사항 승인 불필요 * 자체승인 후 범용성 기자재 구입 가능
구분	내 용	비 고	
지원 기관 승인 사항	① 연구책임자의 변경 ② 연구수행 기간의 변경 ③ 연구수행 기관의 변경 ④ 참여기관의 변경 ⑤ 위탁개발비를 계획보다 20%이상 증액할 경우 ⑥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⑦ 건당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의 연구장비·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,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의 연구장비·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,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(부가가치	인건비 당초 대비 20%이상 증액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함	

	함)이상의 연구장비·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⑧ 연구비 총액의 증감 ⑨ 타 과제 수행에 핵심적인 변경 사항 ⑩ 학생인건비를 당초 계획 대비 5% 이상 증액 혹은 감액할 경우		
자체 승인 사항	① 일반 참여연구원의 변경 ② 전용 가능한 비목·세목간 연구비 전용 ③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자재의 구입 (범용성 기자재 제외) ④ 기타 과제 수행에 부수적인 변경 사항		

	세 포함)이상의 연구장비·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⑧ 연구비 총액의 증감 ⑨ 타 과제 수행에 핵심적인 변경 사항 ⑩ 학생인건비를 당초 계획 대비 5% 이상 증액 혹은 감액할 경우		
자체 승인 사항	① 일반 참여연구원의 변경 ② 전용 가능한 비목·세목간 연구비 전용 ③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자재의 구입 (범용성 기자재 제외) ④ 기타 과제 수행에 부수적인 변경 사항		